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2023년 3월 1일자로 중학교 1개교(미양중학교), 고등학교 2개교(휘경공업 고등학교, 미양고등학교) 교명 변경
- 나. 유치원 1개원(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초등학교 1개교(서울동호초등학교) 위치 정정

3.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1)

정정: 1개교

○ 서울동호초등학교

- 위치 정정: 성동구 동호로5길 133 → 성동구 매봉길 49-35

나. 중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2)

변경: 1개교

○ 미양중학교

- 교명 변경: 미양중학교 → 솔샘중학교

다. 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3)

□ 변경: 2개교

- 휘경공업고등학교
 - 교명 변경: 휘경공업고등학교 →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
- 미양고등학교
 - 교명 변경: 미양고등학교 → 솔샘고등학교

라.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 정정: 1개원

-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위치 정정: 중랑구 봉우재6길 26 → 중랑구 봉우재로6길 26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6]

- 1)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감사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2) 입법예고(2022. 7. 21. ~ 2022. 8. 10.) 결과: 의견 없음 [별첨 7]
- 3) 교육규제심사: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첨 3]
-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 6) 학생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위치란 중 “성동구 동호로5길 133” 을 “성동구 매봉길 49-35” 로 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서울동호초등학교	성동구 매봉길 49-35

별표 2 명칭란 중 “미양중학교” 를 “솔샘중학교” 로 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구	솔샘중학교	강북구 인수봉로 39

별표 3 명칭란 중 “회경공업고등학교” 를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 로, “미양고등학교” 를 “솔샘고등학교” 로 한다.

구 분	지역교육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동부	동대문구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	동대문구 겸재로 21
본청	성북강북	강북구	솔샘고등학교	강북구 인수봉로 39

별표 7 위치란 중 “중랑구 봉우재6길 26” 을 “중랑구 봉우재로6길 26” 로 한다.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동부교육지원청	중랑구	서울중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랑구 봉우재로 6길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9교)	성동구 (20교)	<생 략>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39교)	성동구 (20교)	<현행과 같음>		
		서울동호초등학교	성동구 동호로5길 133				서울동호초등학교	성동구 매봉길 49-35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구 분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17교)	강북구 (8교)	<생 략>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17교)	강북구 (8교)	<현행과 같음>		
		미양중학교	강북구 인수봉로 39				솔샘중학교	강북구 인수봉로 39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3] 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3] 고등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지역 교육 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구 분	지역 교육 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118교)	동부 (8교)	동대문구 (3교)	<생 략>		본청 (118교)	동부 (8교)	동대문구 (3교)	<현행과 같음>	
			휘경공업고등학교	동대문구 겸재로 21				서울국제과학 기술고등학교	동대문구 겸재로 21
	성북 강북	강북구 (3교)	미양고등학교	강북구 인수봉로 39		성북 강북	강북구 (3교)	솔샘고등학교	강북구 인수봉로 39

현행					개정안																												
구분	지역 교육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구분	지역 교육청	자치구명	명칭	위치																								
	(6교)		<생략>			(6교)		<현행과 같음>																									
<p>[별표 7]</p> <p>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동부 교육지원청 (23교)</td> <td rowspan="3">중랑구 (14교)</td> <td><생략></td> <td></td> </tr> <tr> <td>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 <td>중랑구 봉우재6길 26</td> </tr> <tr> <td><생략></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동부 교육지원청 (23교)	중랑구 (14교)	<생략>		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랑구 봉우재6길 26	<생략>		<p>[별표 7]</p> <p>유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치구명</th> <th>명칭</th> <th>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동부 교육지원청 (23교)</td> <td rowspan="3">중랑구 (14교)</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td> <td>중랑구 봉우재로6길 26</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동부 교육지원청 (23교)	중랑구 (14교)	<현행과 같음>		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랑구 봉우재로6길 26	<현행과 같음>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동부 교육지원청 (23교)	중랑구 (14교)	<생략>																															
		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랑구 봉우재6길 26																														
		<생략>																															
구분	자치구명	명칭	위치																														
동부 교육지원청 (23교)	중랑구 (14교)	<현행과 같음>																															
		서울중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랑구 봉우재로6길 2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기관 명칭 및 주소 변경으로 인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학교의 명칭 및 주소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판 등 제작·교체 비용이 발생하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지빈(02-6973-9585)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
입안주관부서	감사관	통보일	2022. 8. 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각급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명 또는 위치를 변경한 학교와 관련된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를 통해 변경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4**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교육010		
정책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담당자명	김지빈	전화번호 02-6973-985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학교지원과)	해당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 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 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 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정원/02-3999-546)

학교지원과장 귀하

별첨 5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담당자	직급		성명	김지빈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공율,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정진권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 개정 내용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되며 권고사항 없음 의견임.					원안동의 (권고사항 없음)

별첨 6 관계법규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17. (생략)

별첨 7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이하 생략)	